

정 관

(2025. 09. 14. 개정)

학교법인 중앙학원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대한민국의 교육이념과 기독교 정신에 입각(의거)하여 초, 중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법인은 학교법인 중앙학원(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설치경영학교)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병설학교로 설치, 경영한다.

1. 중앙기독고등학교 (이하 “고등학교”라 한다.)
2. 중앙특성화 특수학교 (이하 “특수학교”라 한다.)
3. 중앙기독중학교 (이하 “중학교”이라 한다.)
4. 중앙기독초등학교 (이하 “초등학교”라 한다.)
5. 중앙기독유치원 (이하 “유치원”라 한다.)

제4조(주사무소) 이 법인의 사무소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70, (원천동)에 둔다.

제5조(정관의 변경) 이 법인의 정관의 변경은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하고, 교육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갖추어 14일 이내에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법인 및 학교의 사무기구와 정원에 관련된 사항은 이사회 의결로 확정하고, 이를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2 장 자산과 회계

제 1 절 자 산

제6조(자산의 구분)

- ① 이 법인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되 기본재산은 교육용기본재산과 수익용기본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 ② 기본재산은 별지 목록의 재산과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및 기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정하는 재산으로 한다.
- ③ 보통재산은 제2항에서 정하는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7조(재산의 관리)

- ①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재산의 매도, 증여, 교환 또는 용도를 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과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8조(경비와 유지방법) 이 법인의 경비는 기본재산에서 나는 과실과 수익사업의 수입과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 2 절 회 계

제9조(회계의 구분)

- ① 이 법인의 회계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
- ② 법인회계는 일반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할 수 있다.
- ③ 제1항의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은 당해 학교장이 편성하여 법인 이사회 심의. 의결을 거쳐 학교장이 집행하고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은 이사장이 편성하여 법인 이사회 심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집행한다.

제10조(예산외의 채무부담) 수지예산으로써 정한 이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포기는 이사회 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1조(세계잉여금의 처리) 이 법인에 속하는 회계의 매년도 세계잉여금은 차입금의 상환과 익년도에 이월 사용하는 분을 제외하고는 적립하여야 하며, 이 적립금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제12조(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3월 1일부터 익년 2월말일 까지로 한다.

제12조의2(예 . 결산의 공개) 제9조 제1항의 회계는 당해 학교 홈페이지에 1년간 공개하되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5일 이전까지 결산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한다.

제12조의3(예 . 결산보고 및 공시)

- ① 법인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에는 결산을 관할청에

보고하고 공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의한 공시에 관하여는 정관 제12조의2(예 . 결산의 공개) 규정에 의한다.

제 3 장 기 관

제 1 절 임 원

제18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 9인(이사장 1인 포함)
2. 감사 2인

제19조(임원의 임기)

- ①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으며, 이사는 중임할 수 있으나 감사는 1회에 한하여 중임 할 수 있다.
 1. 이사 5년
 2. 감사 3년
-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기간으로 한다.

제20조(임원의 선임방법)

- ①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 경우 임원의 성명, 나이, 임기, 현직 및 주요경력 등 인적 사항을 학교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 하여야 한다.
- ② 임기 전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한다.
- ③ 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 ④ 임원의 선임은 임기만료 2개월 전에 하여야 하며 늦어도 임기 개시 1개월 전에 관 할청에 취임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20조의2(개방임원의 자격) 이 법인의 개방임원은 교회를 정기적으로 출석하는 교인으로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하여 침례 또는 세례를 받은 자로서 출석하는 교회 담임 목사의 추천을 받은 자 이어야 한다.

제20조의3(개방이사의 정수) 이 법인의 개방이사의 수는 3명으로 한다.

※, 이사정수의 4분의 1, 소수점 이하 절상

제20조의4(개방이사의 선임)

- ① 법인은 개방이사의 선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재직이사의 경우 임기만료 3월전)에 그가 설치 . 경영하는 학교의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게 개방이사 선임 대상자를 추천 요청하여야 한다.
- ② 법인은 개방이사 선임대상자를 추천 요청할 때 정관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함께 제시할 수 있다.
- ③ 법인으로부터 추천요청을 받은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의장은 30일 이내에 대상인원의 2배수를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동기간 내에 추천이 없을 시에는 법인은 관할청에 추천을 요청한다.
- ④ 그 밖의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서의 개방이사 추천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21조(임원선임의 제한)

- ① 이사 정수의 반수이상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 ②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각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정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 ③ 이사 정수의 1/3이상은 교육경험이 3년 이상 있는 자라야 한다.
- ④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 ⑤ 감사 중 1인은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서 단수 추천한 자를 선임한다.
- ⑥ 제5항의 감사 추천 등에 대하여는 제20조의4 규정을 준용한다.
-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1. 관할청으로부터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자
 2. 사립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 파면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자
 3. 관할청의 요구에 의해 학교의 장에서 해임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자

제22조(이사장의 선출 방법과 그 임기 등)

- ① 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취임한다.
- ②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 ③ 이사장은 이 법인이 설치 . 경영하는 학교의 장을 겸하지 못한다.

제23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 ①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한다.

-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 받는 사항을 처리한다.
- ③ 이사장은 법인의 필요에 따라 이사회 의결을 거쳐 임원 중 1인을 상근 임원으로 선임할 수 있다
- ④ 상근임원에 대하여는 일정액의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이사장 직무대행자 지정)

-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② 이사장이 궐위 되었을 때는 이사회에서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 직무 대행자로 지명된 이사는 자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25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 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미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 이를 이사회 와 관할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 상황과 회계 또는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 또는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26조(임원의 겸직금지)

- ① 이사는 감사 또는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 . 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학교의 장은 예외로 한다.
- ② 감사는 이사장, 이사 또는 학교법인의 직원(당해 학교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포함한다.)을 겸할 수 없다.
- ③ 이사장은 당해 학교법인 및 다른 학교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사립학교의 장이나 다른 학교법인의 이사장을 겸할 수 없다.

제 2 절 이사회

제27조(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등)

- ① 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한다.
- ②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결정한다.
 - 1. 학교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3. 학교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 4. 임원의 선임과 해임에 관한 사항
 - 5.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
 - 6.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 사항
 - 7.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 8.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8조(이사회의 개회 및 의결정족수)

-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회하지 못한다.
- ② 이사회는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정수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29조(이사회 의결 제척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1. 임원 및 학교의 장의 선임과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임원 자신이 법인과 직접 관계되는 사항

제30조(이사회의 소집)

- ① 이사회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 직무대행이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합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개최를 요구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31조(이사회 소집특례)

-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 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7일 이내에 회의 소집통지를 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반수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25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회의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동으로 이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소집권자가 이사회의 소집을 기피한 경우에는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절 사학윤리 위원회

제31조의2(사학윤리강령 준수)

- ① 이 법인은 법인 및 학교운영에 있어 "사학윤리강령"을 준수한다
- ② 이 법인 및 유지경영 하는 학교의 투명한 운영을 위하여 사학윤리위원회 활동에 협조하고 그 결정사항을 준수한다.

제31조의3(이사회 회의록의 공개) 이사회는 회의종결 후 10일 이내에 당해 회의록을 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3월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이사회에서 사립학교법시행령 제8조의3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하기로 의결한 사항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 4 장 수익사업

제32조(수익사업의 종류) 이 법인이 설치하여 유지 . 경영하는 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부동산 임대사업
2. 도서출판업

제33조(수익사업의 명칭)

제34조(수익사업체의 주사무소)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70, (원천동)에 둔다.

제35조(관리인)

- ① 제33조에 규정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둔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인의 임용, 복무, 보수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

제 5 장 해 산

제36조(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37조(잔여재산의 귀속)

- ①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합병 및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육부장관에 대한 청산종결의 신고가 종료된 후 유관기관에 귀속된다.
- ② 제1항의 유관기관이라 함은 이 법인의 최초설립 시 재산출연기관인 "기독봉사회를 우선적으로 지칭하는 것이며, 그 외의 자를 선택할 경우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다.

제38조(청산인) 이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은 해산당시의 이사 중에서 선출하되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6 장 교직원

제 1 절 교 원

제 1 관 임 용

제39조(임용)

- ① 이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의 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하되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 ② 학교의 장 이외의 교원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한다.
- ③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권자가 교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임용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제2항의 교원을 신규 임용함에 있어서는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채용분야, 채용 인원, 지원자격, 심사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일간신문 또는 정보통신망, 학교 홈페이지,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 ⑤ 공개전형으로 채용하는 교원 임용에 있어서는 당해 학교의 건학 이념을 구현하는데 필요한 요건을 갖춘 자로 제한할 수 있다.
- ⑥ 교원의 휴직 및 복직에 관한 사항은 소속학교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9조의2(전형결과의 공개)

- ① 교원 공개전형에 응시한 자가 전형결과 등에 관한 공개를 요구하는 때에는 신규채용자가 확정된 후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정보 공개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내지 제17조를 준용한다.

제40조(계약제 교원)

- 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운영 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원자격을 가진 자 중 기간을 정하여 기간제 교원을 임용할 수 있다.
 - 1.교원이 직무를 이탈하여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때
 - 2.교원이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의 관계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하게 되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때
 - 3.특정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을 때
 - 4.교육공무원이나 본 법인 예하 학교를 포함한 다른 사립학교에 근무하였던 자중 정년 퇴직한 자의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할 필요가 있을 때
- ② 기간제 교원의 임기는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4년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4년의 기간 동안 근무하다가 임용기간이 만료된 사람은 신규채용 절차를 거쳐 같은 학교에서 법령의 각 호에 따른 동일한 임용 사유로 다시 기간제 교원으로 임용될 수 있다.
- ③ 제1항에 의거 임용하는 교원은 학교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계약제 교원(기간제 교원,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강사)은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당연 퇴직한다.
- ④ 계약제 교원의 대우 및 신분에 관한 내용은 교육공무원법과 관계기관의 지침을 준용할 수 있다.
- ⑤ 본 법인 예하 각 학교 정규교원 공개채용 시 본교 계약제 교원으로 재직 중 인자는 서류전형, 수업시연, 인성검사 등을 생략할 수 있다.

제 2 관 신분보장

제41조(휴직의 사유) 법인 및 각 학교 교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해 교직원의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4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제7호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의 휴양을 요할 때
2. 병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3. 천재지변 또는 전시, 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된 때
4.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5.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게 된 때 또는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 또는 연수하게 된 때
6. 국제기구, 외국기관 또는 재외교육기관에 고용된 때
7. 만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교직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 7의2. 만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제7호에 따른 육아휴직 대상이 되는 아동은 제외한다.)을 입양하는 경우
8.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9. 법인 및 각 학교에서 10년 이상 근속한 자가 자율연수휴직을 요청하여 이사회의 심의 . 의결에 의해 결정되었을 때
10. 본 법인에서 설치 경영하는 학교에서 해외 교사 선교사로 파송된 때
11.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을 요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할 때
12. 배우자가 제5호, 제10호의 사유로 휴직하게 되어 동반하게 된 때

제42조(휴직의 기간) 휴직기간은 각 호와 같다.

1. 제41조 제1호 및 1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을 초과치 아니하는 범위로 한다.
2. 제41조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복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3. 제41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월로 한다.
4. 제41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이내로 한다. 다만 학위취득을 하려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5. 제41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고용 기간으로 한다.
6. 제41조 제7호 및 제7의2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최소 3년으로 한다.
7. 제41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8. 제41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파송 기간으로 한다.
9. 제41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제43조(휴직 교직원의 신분)

- ① 휴직중의 교직원은 신분을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 ② 휴직기간 중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 ③ 제41조 제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직기간이 만료된 교원이 30일 이내에 복귀를 신고한 때에는 당연히 복직된다.

제44조(휴직 교직원의 처우)

- ① 제41조 제1호, 제5호,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직원에 대하여는 그 휴직기간 중 해당 규정에 근거한 봉급 또는 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결핵성 질환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 중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 ② 제41조 제2호, 제4호, 제6호, 제8호, 제9호,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직원에 대하여는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45조(직위해제 및 해임)

- ①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교직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 ②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교직원에 대하여는 직위해제 또는 해임을 명할 수 있다.
 1.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교직원으로서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2.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
 3. 교원이 재직 중 이혼을 하거나 임용과정 중 이혼사실을 은폐한 자
-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가 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다만, 제1항 또는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 해제된 자가 직위 해제일로부터 3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 받지 못할 때에는 그 3월이 경과한 이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5할을 지급한다.
- ⑤ 임용권자는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직위 해제된 자에 대하여 3월 이내의 기간 대기를 명한다.
-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임용권자는 능력회복이나 태도개선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⑦ 제2항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항의 직위 해제 사유가 경합하는 때에는 제2항 제2

호 또는 제1항의 직위 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

- ⑧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 중 능력의 향상 또는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된 때에는 임용권자는 교직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면직시킬 수 있다.

제46조(보수) 교원의 보수는 국, 공립학교의 교원 보수규정에 준하나 자격과 경력 및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7조(의사에 반한 휴직, 면직 등의 금지)

- ① 교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사립학교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부당한 처분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학교, 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② 교원은 권고에 의하여 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 ③ 교원은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제48조(정년 및 명예퇴직) 교원의 정년은 교육공무원법 제47조를 일반직원의 정년은 지방 공무원법 제66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① 20년 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대상범위, 지급액, 지급절차는 법인에서 자율결정 할 수 있다.

제49조(후임자 보충발령의 유예) 교원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되거나 근무 성적 불량으로 면직되었을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의 발령을 하지 못한다.

제 3 관 교직원인사위원회

제49조의2(교직원인사위원회 설치) 교직원(학교의장을 제외한다)의 임용 등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당해 학교에 교직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9조의3(인사위원회의 기능)

-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직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
2. 교직원의 보직에 관한 사항
3. 교직원의 연수 대상자 및 포상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4. 공개전형의 시행에 관한 사항
5. 기타 학교의 장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필요로 한다고 인정한 사항

제49조의4(인사위원회의 조직)

- ① 인사위원회는 학교별로 학교의 장이 임명하는 4인, 법인이사1명, 외부위원1명, 교직원다득표위원 1명, 인사처장1명 총 8명으로 조직한다.
- ② 인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이내로 하되 중임할 수 있으며 인사처장은 인사처장의 임기가 종료되는 시기까지 한다.

제49조의5(인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직무)

- ①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인사위원회 구성원의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 ②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 ③ 인사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9조의6(인사위원회의 회의 소집 등)

- ① 인사위원회 회의는 학교의 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 ② 인사위원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9조의7(회의록 작성)

- ① 인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당해 학교의 장에게 보고한다.
- 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2인 이상이 서명 날인한다.

제49조의8(인사위원회 간사 등)

- ① 인사위원회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 ② 간사와 서기는 당해 학교의 교직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임명한다.

제49조의9(운영세칙)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

제 2 절 교직원징계위원회

제50조(교직원징계위원회의 조직)

- ① 교직원징계위원회는 5인의 위원으로 조직한다. 교직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은 교직원 또는 학교법인의 이사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다만, 학교법인의 이사인 위원의 수가 위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제51조(교직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 선출 및 직무)

- ① 교직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 ② 교직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 ③ 교직원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2조(징계의결의 기한) 교직원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 안에서 1차에 한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53조(제척사유) 교직원징계위원회 위원은 그 자신에 관한 징계사건을 심리하거나 피징계자와 친족관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54조(위원의 기피 등)

- ① 징계대상자는 교직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③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로 교직원징계위원회의 출석위원이 재적위원의 3분의 2에 미달되어 징계사건을 심리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교직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수가 재적위원 수의 3분의 2이상이 될 수 있도록 위원의 임용권자에게 임시위원의 임명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55조(징계의결 요구사유 통지) 교직원의 임용권자가 교직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의결요구와 동시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56조(진상조사 및 의견의 개진)

- ① 교직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진상을 조사하여야 하며, 징계의결을 행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다만, 2회 이상 서면으로 소환하여도 불응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 ② 교직원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7조(징계의결)

- ① 징계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하여야 한다.
- ② 교직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하고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주문과 사유를 기록한 징계 의결서를 작성하고 이를 임용권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 ③ 임용권자가 제2항의 통고를 받은 때에는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의결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임용권자가 법인 일 때에는 징계 처분권을 이사장에게 위임한다.
- ④ 징계처분권자는 징계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결정서를 당해 교직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⑤ 교직원징계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58조(징계의결시의 정상참작 등) 교직원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대상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정, 징계요구의 내용,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59조(징계사유의 시효) 교직원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제60조(교직원징계위원회의 간사 등)

- ① 교직원징계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 ② 간사와 서기는 교직원징계위원회가 설치된 당해 기관 소속직원 중에서 그 임용권자가 임명한다.

제61조(운영세칙) 교직원징계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교직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 3 절 사무직원

제62조(자격)

-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직원(기능직 및 고용원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일반직원"이라 한다)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이 법인과 이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와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② 일반직원의 신규임용에 있어서는 학력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기술직 및 기능직은 임용될 직종에 관한 자격증, 면허증 기타 임면권자가 필요로 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인사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임용할 수 있다.
- ③ 재직 중인 일반직원이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될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제63조(임용)

- ① 일반직원의 신규임용, 승진, 근속승진, 승급, 전직, 전보, 강임, 휴직, 직위해제, 복직, 해임 및 파면(이하 "임용"이라 한다)은 임용권자가 공개채용, 전형 또는 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에 있어서 그 시험과목,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따로 인사규칙을 정한다.
- ③ 일반직원은 이사장이 임용하되, 학교소속 일반직원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이 있어야 한다.

제64조 삭제 (2012.06.04 개정)

제65조 **삭제** (2012.06.04 개정)

제66조 **삭제** (2012.06.04 개정)

제67조(징계 및 재심청구)

- ① 일반직원의 징계는 지방공무원법 규정을 준용하되 일반직원 징계위원회는 법인에 따로 두어야 한다.
- ② 일반직원의 재심청구를 위하여 법인에 일반직원 재심위원회를 두되,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67조의1(준용사항) 이 정관에서 명시되지 아니한 사무직원의 임용 . 보수 . 복무 및 신분 보장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임용령을 준용한다. 단 학교법인의 근속승진제 운영, 대우직원 선발 및 수당지급은 경기도교육청 지침을 적용한다.

제 7 장 직 제

제 1 절 법인

제68조(법인사무조직)

- ① 이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법인 사무실을 두며, 과장 및 행정사무관을 둔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 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 2 절 삭제 (2011.03.18 개정)

제69조 삭제 (2011.03.18 개정)

제69조의1 삭제 (2011.03.18 개정)

제69조의2 삭제 (2011.03.18 개정)

제 3 절 중학교

제70조(중학교 교장 등)

- ① 중학교에 교장 1인과 교감 1인을 둔다.
- ② 교장은 교무를 통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학교를 대표한다.
- ③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며 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④ 중학교 교장은 초등학교 교장을 겸임할 수 있다.

제70조의1(중학교 하부조직) 중학교에 교육행정실을 두며 행정실장은 주사로 보하되 초등학교 행정실장을 겸임할 수 있으며 그 분장업무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 4 절 초등학교

제71조(초등학교 교장 등)

- ① 초등학교에 교장 1인과 교감 1인을 둔다.
- ② 교장은 교무를 통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학교를 대표한다.
- ③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며 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④ 초등학교 교장은 중학교 교장을 겸임할 수 있다.

제71조의1(초등학교 특수학급)

- ① 특수학급에 1학급당 담임교사 1인을 둔다

제71조의2(초등학교 하부조직) 초등학교에 교육행정실을 두며 행정실장은 중학교 행정실장을 겸할 수 있으며 주사로 보하되 그 분장업무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 5 절 유치원

제72조(원장 등)

- ① 유치원에 원장 1인과 원감 1인을 둔다.
- ② 원장은 원무를 통괄하고 소속직원을 감독하며 원아를 보육하고 원감은 원장의 명을 받아 원무를 정리하고 원아를 보육하며 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원장을 대행한다.
- ③ 교사는 원아를 보육한다.

제72조의1(유치원 하부조직)

- ① 유치원의 행정업무는 초등학교 교육행정실에서 겸하며 그 분장 업무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 6 절 정원

제73조(정원) 법인 및 고등학교, 특수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유치원에 두는 일반직원의 정원은 각각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제 7 절 특수학교

제73조의1(특수학교 교장 등)

- ① 특수학교에 교장 1인과 교감 1인을 둔다.
- ② 교장은 교무를 통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학교를 대표한다.
- ③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며 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73조의2(특수학교 하부조직) 특수학교에 교육행정실을 두며 행정실장은 주사로 보하되 초, 중학교 행정실장을 겸임할 수 있다.

제 8 절 고등학교

제74조의1(고등학교 교장 등)

- ① 고등학교에 교장 1인과 교감 1인을 둔다.
- ② 교장은 교무를 통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학교를 대표한다.
- ③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며 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④ 고등학교 교장은 중학교 교장을 겸임할 수 있다.

제74조의2(고등학교 하부조직) 고등학교에 교육행정실을 두며 행정실장은 주사로 보하되 초, 중학교 행정실장을 겸임할 수 있다.

제 8 장 학교운영위원회

제75조(목적) 이 장은 초·중등 교육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및 동법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 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립학교의 학교 운영위원회 (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75조의1(위원회 설치 및 범위) 병설학교는 분리하여 운영한다.

제75조의2(위원회의 기능 등)

- ① 운영위원회는 법 제32조 및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외에 학교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2. 지역사회교육에 관한 사항
 3. 교내사고 및 학교 관련 각종 민원사항
 4. 기타 학교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 사항과 학교장이 자문 요청한 사항
 5.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6.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 ② 학교운영 등과 관련된 건의사항은 위원 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절차등에 대하여는 규정으로 정한다.
- ③ 교원위원에 선출되지 않은 교감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할 수 있다.

제76조(위원회 선출 등)

- ①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 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회는 임기 만료일 전까지 선출한다.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6월 미만으로서 위원 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궐위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 중에서 당해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한 배수를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추천한 자 중 학교의장이 위촉한다.
- ③ 위원의 선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77조(위원의 임기)

-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②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월1일로 한다.

제78조(위원의 자격)

- ① 학부모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 33조의 공무원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 ② 학부모 및 지역위원의 자격 중 정당원에 대한 자격 제한 여부 및 교원 위원의 자격은 규정으로 정한다.
- ③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다만, 병설학교 교장은 소속학교의 당연직 교원위원을 겸임할 수 있다.

제79조(위원의 의무 등)

- 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서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②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 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 ③ 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운영지원비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 지워서는 아니 된다.

제80조(위원의 자격상실)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 ①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한 때
- ② 학부모위원은 자녀학생의 졸업, 휴학, 전학 및 퇴학한 때
- ③ 회의소집 통지를 받고도 사전 연락 없이 3회 연속하여 회의에 불참하였을 때
- ④ 학부모 위원이 제출한 신상 자료에서 허위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
- ⑤ 위원이 정관 제77조에 위배된 사실이 발견된 때

제81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 ① 영 제59조 제5항에서 규정한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 ③ 제2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 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⑥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기간으로 한다.

제82조(간사)

-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83조(서류제출 요구)

- ①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안건의 자문과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당해 학교장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으며 그 범위는 규정에 의한다.

제84조(회의소집 등)

-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의 소집 시기는 규정으로 정한다.
- ② 위원 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임시회는 학교장이 위원 임기 개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 ③ 임시회 소집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회의 개최 7일 전에 소집 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④ 운영위원회 회의 일수 및 회기 등 회의에 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다만, 회의 일수는 연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85조(소위원회의 설치)

- ① 운영위원회는 안건심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소위원회의 종류 및 이외 운영을 위한 절차 등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86조(안건의 제출 . 발의)

- ① 운영위원회에서 자문할 안건은 학교장이 제출하거나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법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학교장이 이를 제출한다.

제87조(의사 정족수 등)

- ①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

정한다.

제88조(회의 공개원칙)

-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 통신문, 학교 게시판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사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9조(회의록 작성)

- ① 운영위원회는 회의록 작성하고 회의진행 내용 및 결과와 출석 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
- ② 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에 비치하여 학부모, 교직원 및 지역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 말에 자문을 받은 예 . 결산 내역을 포함한 위원회의 활동 사항 보고서를 작성하여 학부모, 교직원 및 관할 교육청 등에 배포하고 차기 정기회 의시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90조(학교내외의 자생 조직)

- ①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내외의 자생조직은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하거나 운영위원회의 산하단체로 둘 수 있되, 그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 발언할 수 있다.

제91조(운영경비 등)

- ① 위원의 연수경비, 회의경비 등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규정으로 정한다.

제92조(위임규정)

- ① 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이 령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92조의2(개방임원 추천)

- ① 추천위원회는 위원의 과반수의 의결로 이사는 대상인원의 2배수, 감사는 단수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후보자를 추천한다. 이 경우 추천 순위는 기재하지 아

니한다.

1. 후보자 성명, 생년월일
2. 후보자 학력 및 경력
3. 후보자 동의서
4. 후보자와 당해 학교법인과의 특수관계 여부 확인
5. 후보자와 당해 학교법인과의 최근 영업거래 내역서

제92조의3(개방임원 추천위원회 구성)

- ① 사립학교법 제14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의 개방임원 추천을 위한 각 학교의 학운위 대표들로 구성된 개방임원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한다.
- ② 추천위원회 위원은 추천자의 의사가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합리적 기준에 의거 5명으로 구성하되, 구성단위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앙기독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 1인
 2. 중앙기독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 2인
 3. 중앙 통합형 특수학교 학교운영위원회 : 1인
 4. 중앙기독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 1인
- ③ 추천위원회 의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 ④ 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또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 ① 이 영은 승인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최초 구성되는 위원회 위원 임기)

- ①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최초로 구성되는 위원의 임기는 익년도 3월 31일 까지로 한다.

제3조(최초의 규정)

- ① 최초의 규정은 당해 학교의 교직원 및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장이 제정한다.

제9장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제93조(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은 영 제6조 제4항에 의거 이 법인이 설치경영 하는 각급 학교에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제94조(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 등)

- ①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이하 "각급 학교"라 한다)에서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교원(당해 학교의 직원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분쟁사안을 심의 . 조정 . 권고(이하 "심의 등"이라 한다)한다.
 1. 학생생활지도 등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교원과 학부모간에 발생한 분쟁
 2. 학교안전사고에 대해 경기학교안전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 보상액 등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동 사고 관련 교원에게 추가보상 등을 요구하여 일어난 분쟁
 3. 기타 교원예우 및 교권보호 존중에 위해가 되거나 위해의 우려가 있는 사항
- ② 위원회는 분쟁에 관한 심의 등을 하기 전에 당사자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가 학생 안전사고 관련 분쟁사안에 관한 심의 등을 하기 위하여 경제적, 법률적 전문지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제회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제회는 임직원의 회의참석, 고문변호사의 조언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95조(위원회의 구성 등)

-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 ② 위원은 당해 학교 운영위원회 위원 중 동 위원회가 추천하는 교원위원, 학부모위원, 지역위원 각 1인을 학교장이 위촉한다.
- ③ 학교장은 필요 시 법률 또는 행정 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자 1인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하는 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한다.

제96조(위원장)

-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7조(위원의 의무)

- 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서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② 위원은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 ③ 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8조(분쟁조정 신청) 분쟁에 관련된 교원 또는 학부모는 위원장 또는 학교장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분쟁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제99조(회의개최 등)

- ① 회의는 분쟁조정의 신청이 있는 때 개최한다.
- ② 분쟁조정신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은 신속히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늦어도 신청이 있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개최한다.
- ③ 회의의 소집 통지는 위원장이 위원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하되, 개최일 3일 이전에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사안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0조(위원의 제척) 위원이 분쟁의 당사자가 된 경우에는 당해 사안의 심의 등 위원의 자격으로 참여할 수 없다.

제101조(심의 등 결과의 처리)

-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등의 결과를 관련 당사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 ② 당사자는 위원회의 심의 등 결과를 존중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는 심의 등 결과, 보상해결이 필요하거나 당해 교원을 위한 소송 대행 기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교장으로 하여금 공제회에 이를 신청하게 할 수 있다.
- ④ 위원회는 분쟁사안 중 교원에 대한 협박 . 폭행 . 폭언 등으로 당해 교원 또는 학교교육에 과중한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학교장으로 하여금 관련자를 사법기관에 고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⑤ 위원회는 분쟁사안 중 학생에 대한 폭력 등 학생인권 침해의 정도가 범죄 수준에

이를 정도로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학교장으로 하여금 당해 교원의 징계의결 등 인사 조치를 요청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02조(간사) 위원회의 기록 등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교직원 중에서 학교장이 지명하는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

제103조(학교운영위원회규정의 준용) 위원회의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자격상실, 기타 회의의 운영 등에 관하여 본 장(절)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동 정관 중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준용한다.

제104조(운영세칙) 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10장 보 칙

제105조(공고) 이 법인의 법령과 정관 및 기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수원시에서 발간되는 일간 신문에 공고한다.

제106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제107조(설립 당초의 임원) 이 법인의 설립 당초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임기	주 소
이 사	김 장 환	1934. 7. 25	4년	수원시 권선구 매교동 86-3
이 사	송 재 문	1942. 2. 01	2년	서울 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37-11
이 사	이 도 선	1921. 6. 01	4년	수원시 권선구 고등동 141-47
이 사	김 준 환	1931. 7. 18	4년	수원시 장안구 우만동 479-1 보은 아파트 905호
이 사	김 정 한	1944. 1. 14	2년	서울 강남구 역삼동 712-3 개나리아파트 33동 606호
이 사	박 양 시	1941. 5. 25	2년	수원시 장안구 지동 400-19
이 사	조 영 근	1930. 12. 26	4년	20145 Delta DR Woodland Hills, CAP 1364
이 사	윤 석 태	1933. 7. 21	2년	수원시 장안구 화서동 184-139
감 사	백 이 선	1941. 1. 20	1년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2-1
감 사	최 종 화	1954. 7. 26	2년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 462 삼환아파트 4-1308호

[별표 1]

법인 일반직 정원

총 계	6명
일반직계	6명
3급	1명
4급	1명
7급	1명
8급	1명
9급	2명

[별표 2]

중학교 일반직 정원

총 계	6명
일반직계	6명
6급	1명
7급	1명
8급	2명
9급	2명

초등학교 일반직 정원

총 계	19명
일반직계	19명
6급	2명

7급	2명
8급	2명
9급	13명

유치원 일반직 정원

총 계	3명
일반직계	3명
8급	2명
9급	1명

특수학교 일반직 정원

총 계	5명
일반직계	5명
6급	1명
8급	1명
9급	3명

고등학교 일반직 정원

총 계	4명
일반직계	4명
7급	1명
8급	1명
9급	2명

재 산 목 록

교육용 기본 재산 (토지)

[단위 : m²]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용도	면적(m ²)	소유현황	재산가액	비고
토지	원천동	134	학교용지 교육연구시설	44,431	학교법인 중앙학원		

수익용 기본재산 (현금)

[단위 : 원]

구분	금융기관	예금종류	수익용기본재산	비고
현금	신한은행	정기예금	9,000,000 원	예금계좌-1 개
			9,000,000 원	

수익용 기본재산(부동산)

구분	소재지	용도	면적(m ²)	소유현황	재산가액	비고
건물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76(원천동) 1동 2층	임대 수익용	717.1115	학교법인 중앙학원	6,336,542,743원	

부 칙

- (시행일) 이 정관은 1992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교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 및 일반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이사장이 임면한 것으로 본다.
- (교원징계에 대한 경관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교원징계위원회 및 재심위원회에 계류 중인 징계 및 재심청구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학교의 장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기 없이 임명된 학교의 장의 임기는 이 정관 시행 일로부터 기산 한다.
- (일반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일반직원이 퇴직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신규임용은 그 초과하는 정원이 있을 때에는 채용하지 못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정관은 1993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정관은 1994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정관은 1994년 5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정관은 1995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정관은 1995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정관은 1996년 5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정관은 1996년 9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정관은 2000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정관은 2000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정관은 2000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정관은 2001년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정관은 2003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정관은 2006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정관은 2006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정관은 2007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정관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정관은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정관은 2010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정관은 2011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정관은 2012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정관은 2012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정관은 2013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정관은 2014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정관은 2015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정관은 2016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정관은 2018년 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정관은 2020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정관은 2022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정관은 2023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정관은 2024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정관은 2025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